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9

발의연월일: 2020. 8. 10.

발 의 자:김희국·강기윤·김석기

하영제・金炳旭・윤재옥

김승수 · 권명호 · 정희용

김상훈 · 김예지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 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5호" 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80조의2"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 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일부터 10년
 - 2. 제24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1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부터 10년
- 2.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7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5년
- 3.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제5호라 목 및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 일부터 5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등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	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u> </u>
이하 <u>이 조</u> 에서 같다)과 인·허	<u>이 조 및 제80</u> 조의 <u>2</u>
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	
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	
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	
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	
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	
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	
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	
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 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일부터 10 년
 - 2. 제24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

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1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 2.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7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 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5년
- 3. 제31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 각 호 (제5호라목 및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